

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(이촌1동 302-75) [www.kma.org]/전화(02)6350-\*\*\*\*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419호

시행일자 2017. 9. 27.

수 신 각 시도지사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고시 일부개정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7 - 172호(2017. 9. 26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 
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(보건복지  
부 고시 제2017-106호, 2017.6.27.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 
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-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 관련 특정기호 삭제 및 신설
- 난임, 신경인지검사 급여화,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특정기  
호·내역 신설
- 약사법 등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
- 시행일: 2017. 10. 1부터

[문의-보건복지부]

- \*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: 044-202-2736
- \* 치매 산정특례 : 044-202-2746
- \* 난임, 신경인지검사 : 044-202-2737

붙임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